

2023학년도

건강·지혜·용기로 큰 꿈을 키우는

황등남초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황 등 남 초 등 학 교

54534 전북 익산시 황등면 황등서로 55
 ☎(063)856-6333 Fax(063)856-4602
<http://www.hnam.es.kr>

2023학년도

건강·지혜·용기로 큰 꿈을 키우는

황등남 교육과정 안내

I. 학교 현황	1
II. 황등남 교육 목표	2
III. 황등남 중점 교육활동	3
IV. 2023학년도 학사 일정	6
V. 출결관리 규정	7
VI. 학부모 연수 자료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9
2. 교육활동(교권) 보호	11
3. 원격수업 운영 안내	17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18
5. 도박예방 교육	19
6. 아동학대 예방교육(가정폭력 예방교육)	21
7. 학교폭력 예방교육	22
8. 학생 인권 교육	23
9.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대응요령	24
10. 성폭력 예방교육	25
11. 정보통신윤리교육	26
12. 청렴실천 학부모 연수	28
13. 양성평등·성교육·흡연음주예방·응급처치·감염병예방	32

I. 학교 현황

1. 학교 연혁

1970.	4.	1	항등국민학교 남분교 개교
1971.	3.	1	항등남국민학교 설립인가(15학급)
1983.	3.	1	항등남국민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1996.	3.	1	항등남초등학교로 개명
1999.	11.	9	농어촌 현대화 학교 신축 준공
2000.	3.	1	전라북도교육청지정 교실수업개선 시범학교
2003.	3.	1	전라북도교육청지정 교과교육(국어) 연구학교
2010.	3.	1	전라북도교육청지정 학력신장 연구학교
2014.	3.	1	전라북도교육청지정 다문화학생교육 연구학교
2018.	3.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정 예술꽃 씨앗학교
2021.	9.	1	제15대 김선자 교장 부임
2023.	1.	4	제51회 졸업(총 졸업생 4,152명)
2023.	3.	1	8학급 편성(특수학급 1학급)

2. 학생 현황

학 년	1	2	3	4	5	6	장미반	계	유치원	
학 급	1	1	1	2	1	1	1	8	1	
학 생 수	남	9	14	12	15	12	8	(2)	70	1
	여	9	7	12	18	7	5	(2)	58	3
계	18	21	24	33	19	13	(4)	128	4	

3. 교직원현황

구분	교장	교감	교 사				일 반 직		교육공무직원						계	
			부장 교사	교사	특수 교사	보조 교사	유치원 교사	행정 실장	주무관	영양사	돌봄 전담자	교무 실무자	조리원	청소원		배움터
남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4
여	1	1	2	5	1	1	1	1	2	1	2	1	2	1	1	21
계	1	1	2	6	1	1	1	1	3	1	2	1	2	1	1	25

II. 항등남교육목표

비전 **건강 지에 용기로 큰 꿈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

교육 목표	도덕인	창의인	심미인	세계인
	건강한 몸과 바른 성품을 기른다.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미래역량을 기른다.	꿈과 끼를 키워 풍부한 감성을 기른다.	세계 문화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도전의식을 기른다.

중점 과제	Mind up	기초학력 향상	학생의 꿈과 끼 신장	다문화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소, 인사, 대화, 칭찬의 생활화 -“사랑합니다” 인사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드림학교 운영 -교과보충프로그램 -담임교사 학생책임지도 -학생 중심 수준별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진로교육 실시 -푸른돌 발표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실시 -다품교육주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Health up -학급별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보건교육의 내실화 -건강하고 행복한 급식시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움 중심 수업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에듀테크 기반 스마트 학습 -학생중심 SWAI 디지털 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직원 동아리) 운영 -국제시민역량 향상을 위한 영어전담교사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동아리 -매주 화,수요일 방과후 주 2회 예술동아리 활동 5개 부서 활동 -오케스트라 운영 -학급별 연구 동아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체험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 체험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등 역사문화유산 체험 -다이로움농촌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lation up -나란히나란히 데이 -전문상담교사 개인 및 집단 상담 운영 -어울림 주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서를 통한 깨달음 -독서 분위기 형성 및 독서교육 활성화 -온책읽기 활용 -작가와의 만남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한 방과후학교 -학년말 수요조사에 따른 학생 중심 강좌 개설 -유무료 6개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를 향하여 -스마트기기 및 IoT용 미래역량 강화 -디지털교과서 및 AI 활용교육 -놀이중심 영어수업

7대 미래 역량	협력적 소통능력	창의력	자기주도성	디지털 문해력	예술적 감수성	비판적 사고력	인문학적 소양
----------	----------	-----	-------	---------	---------	---------	---------

교육중점 1

● 3-UP 참맛살이를 통한 자(량스런 우리)·신(명나는 우리)·감(사할 줄 아는 우리) 키우기

교육중점 2

● 독서교육의 생활화를 통한 창의 인성 함양

● 다문화 감수성(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체 및 의사소통 역량 함양

● 예술동아리 활동을 통한 심미적 감성 역량 강화

III. 황등남 중점 교육활동

(교육중점 1) 3-UP 참맛살이*를 통한 자·신·감 키우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으로 바른 가치관 및 인격 형성 □ 심력, 체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활동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생활 습관 및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
----	--

기 본 방 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력을 기울 수 있는 "Mind-UP" 인성 프로그램 운영 □ 체력을 기울 수 있는 "Health-UP" 체력 프로그램 운영 □ 자기 관리 및 대인관계 능력을 기울 수 있는 "Relation-Up" 프로그램 운영
------------------	--

세 부 추 진 계 획	<p style="text-align: center;">Mind - 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1회 칭찬고리 운영 -칭찬3운동:장점칭찬, 긍정의 언어, 이름 불러주기 -칭찬사위 전개 ◦ 함께하는 인사말 "사랑합니다" 사용하기 ■ 십자 정서발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맞팔 자기자랑 갖기 -학급장기자랑, 푸른말발표회 ◦ 친구와 우정 나누기 	<p style="text-align: center;">Health - 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건강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치습관 실천 프로그램 ◦ 비만관리를 위한 아침 걷기 활동 ◦ 안전체험활동(2,5학년) 운영 ■ 학년군별 스포츠데이 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희망 영역 선정 학년군 어울림 스포츠 활동 ■ 주 1회 동아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학생 중심 자율동아리 활동 	<p style="text-align: center;">Relation - 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소양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동아리(연극) 운영 ◦ 오케스트라 운영 • "사랑의 대화" 시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학생, 학부모 연계 상담 -상담 주간 운영(학기당1회) ■ 개인 및 집단상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각종 상담프로그램 운영 (자아코칭, 통합예술프로그램, 동작테라피 등) • 어울림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울림 주간 운영 ◦ '나란히 나란히' 데이 운영 ◦ 학년별 진로체험활동
----------------------------	---	---	---

3-UP과 함께 자·신·감 키우기

기 대 효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nd-UP" 활동을 통한 "자랑스러운 우리" 만들기 □ "Health-UP" 활동을 통한 "신명나는 우리" 만들기 □ "Relation-UP" 활동을 통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만들기
------------------	---

* 참맛살이=힐링(Healing)을 의미하는 손우리말,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는 3-UP 교육활동

(교육중점 2) 독서교육의 생활화를 통한 창의 인성 함양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즐거움 책임기 교육"으로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책임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할 수 있도록 전개 □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문해력,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여 미래 사회로의 인재를 육성하고, 창의 인성의 함양
----	--

기 본 방 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발달단계에 적합한 도서 구입 및 학년별 '이 달의 책' 선정 □ 권장 및 필독도서 선정을 통한 독서 생활화 □ 독서 의욕 고취 및 독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독서 행사 실시
------------------	--

세 부 추 진 계 획	<p style="text-align: center;">독서교육 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근한 도서관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실 소리함 이용 -도서 추천 게시판 운영 -희망도서 신청 게시판 운영 ◦ 독서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년별 필독도서 및 권장 도서 선정 및 확충 -도서실 활용수업 전개 (학급별 주당 1시간) -학급별 특색있는 독서 활동 운영 -학급 도서 도서관 대출 ◦ 어린이 도서관도우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 대출 및 반납 -도서실 활용 지도 -도서실 서가 정리 등 	<p style="text-align: center;">독서의 생활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활동시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 독서 시간 운영 -전교생, 전교직원 참여 -학급별 도서관 독서주간 운영 ◦ 주1권 이상 책 읽기 ◦ 1인1책 갖기 지원 ◦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한학기 한권읽기 수업 지원 ◦ 독서교육종합시스템 활용 독후활동 참여 ◦ 가정 독서 분위기 조성 - 온 식구 책 읽기 시간, 도서관 이용 학습 	<p style="text-align: center;">다양한 독서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 의욕 고취를 위한 독서행사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읽어주기' 전개 -저학년 주 1~2회 ◦ '북스타트' 전개 -1~3학년 책꾸러미 지원 ◦ 학년별 독서 프로그램 -'자기와의 만남' 운영 -그림책 활용 수업 전개 -온책읽기 연계 활동 ◦ 독후활동 전시, 소감 나누기 ◦ 독서편지쓰기, 독서퀴즈, 독서 골든벨 등 ◦ 학교 문집 '황등제' 발간
----------------------------	--	--	---

즐거움 책임기! '창의 인성이 쑥쑥'

기 대 효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정과 연계한 독서의 생활화로 창의적인 사고와 올바른 인격 형성 □ 교과교육과 연계된 독서교육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 토론 및 논술 교육을 통하여 평생 학습의 기반 조성 및 창의력 신장 □ 독서의 방법, 도서실 자료 이용 등에 대한 능력 신장
------------------	--

다문화 감수성(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목적	□ 학생들에게 글로벌 사회에 필요한 타인의 다양한 관점과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편견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및 협력적 소통능력 함양		
기본 방침	□ 문화다양성, 다문화이해 환경 조성 □ 학교 및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다문화 체험활동의 전개 □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적용		
세부추진계획	다문화이해 환경 조성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다양한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교육대상자 배려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 다문화 교육 환경 조성 -동영상 및 학습자료 확충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다문화 관련 요소 추출 -교과 연계 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핵심역량 프로그램 맞춤형 학생 지원 프로그램 -중도입국학생 지원 -학력증진 프로그램 -Wee Class 행복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다문화 체험활동 -다꿈교육주간 -어울림 한마당 지역사회 연계 다문화 체험 -지역축제 활용 체험 -익산글로벌문화관 체험 -전통문화체험 등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기대 효과	□ 다문화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더불어 살아가는 공감 및 소통, 협력 등의 공동체 의식 형성 □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다문화 감수성을 내면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예술동아리 활동을 통한 심미적 감성 역량 강화

목적	□ 음악의 기초 기능을 익혀 개성있게 표현하고 음악의 아름다움 경험 □ 음악 동아리 참여를 통한 특기.적성 개발 및 건전한 여가 생활 □ 연극동아리 운영을 통한 예술교육 강화로 정서순화와 심미적 능력 신장		
기본 방침	□ 1인 1음악 동아리활동 및 문화예술활동 체험을 통한 정서 순화 □ 스스로 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학생 자율동아리활동 운영		
세부추진계획	음악의 생활화	문화예술활동 체험	나눔 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동아리활동 전개 -학생 희망에 따른 악기별 부서 운영 (첼로, 바이올린, 플루트, 클라리넷) 동아리 외부강사 연계지도 -푸른솔 오케스트라 운영 -매주 화,수요일 6-7교시 방과 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년별 음악 융합교육 실시 -전학년 예술교육 강화 학년별 수준에 맞는 음악회, 뮤지컬 관람 등 체험활동 학급 연극 동아리 운영 지원 다양한 발표회 전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푸른솔 교육활동발표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문화공헌 협력 -항등지구 학교 연합 음악회 푸른 뜰 연주회 -학교 뜰 공간을 활용한 나눔 연주회
기대 효과	□ 음악을 가까이 하는 생활로 정서 순화 및 건전한 인격 형성 □ 특기.적성 개발 및 악기 연주 활동을 통한 표현력 신장 □ 부시간 어울림활동으로 소통과 배려의 바른 인성 함양		

IV. 2023학년도 학사일정

3월 MARCH							4월 APRIL							5월 MAY							6월 JUNE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	6	7	8	9	10	11	2	3	4	5	6	7	8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9	10	11	12	13	14	15	14	15	16	17	18	19	20	11	12	13	14	15	16	17
19	20	21	22	23	24	25	16	17	18	19	20	21	22	21	22	23	24	25	26	27	18	19	20	21	22	23	24
26	27	28	29	30	31		23	24	25	26	27	28	29	28	29	30	31				25	26	27	28	29	30	
						22							20							20							21
* 삼일절(1) * 시업식, 입학식(2) * 친구사랑주간(2-10) * 교풍안전교육(9) * 진단활동주간(13-17) * 학교교육과정설명회(21) * 전교어린이회 선거(17) * 5학년 성문화센터(28) * 6학년 성문화센터(28)							* 개교기념일(1) * 학부모상담주간(10-14) * 2,3,5,6학년 구강검사(11) * 학교폭력예방교육(13) * 2,3,5,6학년 소변검사(17) * 과학의 달 교육주간(17-21) * 1-4성폭력예방인형극관람(20) * 자살예방교육(21) * (장애)인권교육주간(24-28) * 교직원 장애인식개선교육(26) * 1,4학년 구강검사(27)							* 학교장재량휴일(1) * 차야휴대주기(2-3) * 스포츠대이주전(2-12) * 어린이날(5) * 5,6학년심폐소생술교육(16) * 다꿈교육주간(22-26) * 부처님오신날(27) * 대체공휴일(29)							* 마약·흡연·음주및약물오남용 예방주간(5-9) * 흡연예방캠페인, 선서식(5) * 현충일(6) * 약물오남용예방 아동극(9) * 양성평등교육주간(12-16) * 소방훈련교육(14) * 학부모자녀수업함께하기(20) * 2,5학년 안전체험활동(28) * 5학년 기본외국어이과정(29-30)						
7월 JULY							8월 AUGUST							9월 SEPTEMBER							10월 OCTOBER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1							1							1
2	3	4	5	6	7	8	6	7	8	9	10	11	12	3	4	5	6	7	8	9	8	9	10	11	12	13	14
9	10	11	12	13	14	15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5	16	17	18	19	20	21
16	17	18	19	20	21	22	20	21	22	23	24	25	26	17	18	19	20	21	22	23	22	23	24	25	26	27	28
23	24	25	26	27	28	29	27	28	29	30	31		24	25	26	27	28	29	30	29	30	31					
30	31					17						7							19							19	
* 경보통신윤리교육(12) * 어울림주간(20-21) * 방학식(25)-4교시, 급식 운영 * 여름방학(26-31)							* 여름방학(1-22) * 광복절(15) * 개학식(23) * 친구사랑주간(28-9.1) * 1학기 수업일수: 100일 * 2학기 시작일: 8.23(수)							* 3학년수상안전교육(4-8, 오후) * 4학년수상안전교육(4-8, 오전) * 교통안전교육(12) * 진로교육주간(11-15) * 학부모 상담주간(18-22) * 학교폭력예방교육(21) * 추석연휴(28-30)							* 학교장재량휴일(2) * 개천절(3) * 현상체험학습(5) * 한글날(9) * 재난대응안전훈련주간(23-27) * 발표회, 총연식(24) * 푸른솔 교육활동발표회(27)						
11월 NOVEMBER							12월 DECEMBER							2024년 1월 JANUARY							2024년 2월 FEBRUARY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1							1							1
5	6	7	8	9	10	11	3	4	5	6	7	8	9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10	11	12	13	14	15	16	14	15	16	17	18	19	20	11	12	13	14	15	16	17
19	20	21	22	23	24	25	17	18	19	20	21	22	23	21	22	23	24	25	26	27	18	19	20	21	22	23	24
26	27	28	29	30			24	25	26	27	28	29	30	28	29	30	31				25	26	27	28	29		
						22							20							3							0
* 마약·흡연·음주및약물오남용 예방주간(1-3) * 흡연예방교육(1) * 교직원심폐소생술교육(1) * 양성평등교육주간(6-10) * 합동소방훈련교육(8) * 가정교육주간(13-17) * 경보통신윤리교육(15) * 인권교육주간(20-24)							* 교육과정운영평가주간(4-8) * 성탄절(25) * 겨울방학안전주간(26-29)							* 신정(1) * 겨울방학안전주간(2-5) * 종업식, 졸업식(4) * 겨울방학(5-31)							* 설연휴(9-11) * 대체공휴일(12) * 겨울방학(1-28) * 2학기 수업일수: 90일 * 연간 수업일수: 190일						

* 학교 사정에 따라 학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V. 출결관리 규정

1. 출결상황 관리

가. 결석

- 1) 결석일수의 산정: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 2) 출석인정결석 - **증명자료 제출**
 -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기간
 - 라)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증명자료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서식 1] 결석계와 증명자료 제출 필요함.**
 -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 제출
 - 나)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결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면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① 결석계+② 의사진단서(소견서)
 -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4) **미인정 결석**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라)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마)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기타 결석

- 가)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나)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다)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학년 수료

-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 2)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유예 처리 후 정 원외로 학적 관리함.
- 3) 위 2)항의 경우 해당연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학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가. 교외체험학습[서식 2]

◇ 일과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 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한다.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이 불가하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3]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바.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 2]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1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 선행학습 유발 요소를 줄여 공교육 정상화 추진

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의 문제점

-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하여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3 공교육정상화법 적용

- 가. 선행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 나.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 다.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 라.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마. 적용의 배제

-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등학교 및 대학 등에 적용되나, 영재교육기관, 조기진급자, 적용배제교과(군),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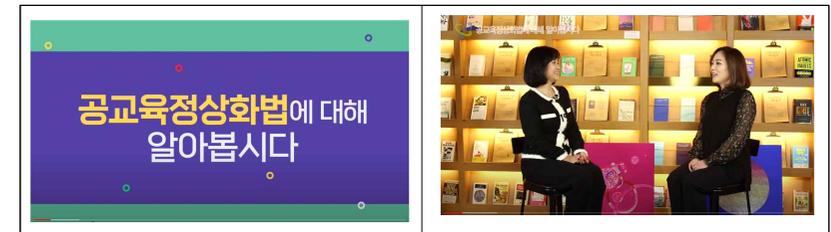
-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적용되는 교과: 국어, 수학, 통합교과
- 초등학교 3~6학년에서 적용되는 교과(군):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 영어

4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관련 영상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자료마당]-[공교육정상화법 홍보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_lohBYEqmaw

2. 교육활동(교권) 보호

학부모

제1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의 변천 과정

교원의 교육활동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관련 규정이 교원지위법에 제정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현행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보호 규정은 대응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대통령령
<p>舊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p> <p>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규정 부존재</p>	<p>舊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p> <p>시·도 교육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규정됨.</p>
<p>舊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936호, 2016. 2. 3. 공포, 8.4.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중에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침해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제명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p>舊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18호, 2016. 8. 2. 공포, 8.4.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구체적 유형 및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명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309호, 2019. 10. 17. 시행)

- 침해학생에 대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 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강화함.
-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인 등 보호조치의 근거를 강화함.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19호, 2019. 10. 17. 시행)

-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학부모

제2부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0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입니다. 실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부분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나 법은 침해행위자를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활동 보호 규정은 주로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의 자, 즉, 학교관리자, 교육행정기관, 동료교원, 지역주민, 언론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0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객체

교육활동 중인 교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규정은 교원의 신분 자체를 보호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활동과 무관하게 이뤄진 교원에 대한 위법행위에는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3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제2조

-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04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

☑ 폭행·상해(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개념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고,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효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신체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잡아서 흔드는 경우
- 큰소리로 폭언을 하여 피해교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

☑ 협박(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개념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뜻하며,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피해가 예측되어야 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위험한 물건을 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위협한 경우
- 피해교원에게 학교폭력을 은폐한 사실을 기자와 교육청에 말하겠다고 위협한 경우

☑ 모욕·명예훼손(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개념

모욕은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고, 명예훼손은 공연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체적 진실을 전달하더라도 그것이 상대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정교원의 외모를 지칭하며 경멸적으로 말하는 경우
- 다른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는 경우

☑ 손괴(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개념

다른 사람의 재물, 문서, 기록 등을 부수거나,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이물질을 담임교사 차량의 에어컨 배기구에 부어 손상을 입힌 경우
-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교실에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2호)

1) 개념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 및 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강요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상담 시 허리, 종아리, 허벅지 등 일반인의 시각에서 접촉이 꺼려지는 부위를 고의로 접촉하는 경우
-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3호)

1) 개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① 비방할 목적으로 다수에게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여 특정한 사회적 평판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②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보내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 역시 구체적 진실을 전달하더라도 그것이 상대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 학대하고, 이를 따지는 학부모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게시한 경우
-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새벽시간을 포함할 수 일 동안 “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교사의) 자손들이 장래 불행할 것이다”라는 등의 저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 십여 차례 보내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 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호,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1) 개념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 혹은 위계로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방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무 중인 교원에 대해 폭행·협박행위를 하는 경우, 직무/업무라는 법익 또한 침해되었으므로 교육공무원인 교원인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면,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 관련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하여 수업 집행을 방해한 경우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조,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1) 개념

성적 언동(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교에서 자녀 상담을 하던 학부모가 성적인 비유와 농담을 반복적으로 하여 담임교사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조,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1) 개념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체육교사에게 '수업시간에 야의 체육활동을 하지 말고 자습을 시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시험 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 '시험범위를 줄이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라며 반복적으로 요구·간섭하는 경우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1) 개념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학교장이 교권존중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사를 무시하며 학생들에게 교사의 말을 듣지 말라고 종용하는 경우

05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 가정교육의 중요성 인식하기

가정교육은 학교교육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정교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학교교육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성교육이나 생활습관 개선, 관계성 교육 등은 가정교육을 통해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원과 학부모의 관계 재정립하기

교원과 학부모 간의 신뢰와 존중은 학생 보호와 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과 학교를 신뢰할수록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 교원과 학부모는 자녀(학생)를 키우는 새로운 부모와 같습니다. 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마음이 협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 학교 교육의 미래는 교원과 학부모의 역할의 연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가 해야 하는 예절교육은 가정에서 하고, 교원은 집단행동 속에서 아이들이 최소한의 규범을 준수할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한다면, 서로 의견일치를 보이는 것입니다.
-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모두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녀(학생)를 보호하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06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된 경우

- ① 학교에서의 봉사
- ② 사회봉사
-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④ 출석성지
- ⑤ 학급교체
- ⑥ 전학
- ⑦ 퇴학처분(초등은 해당되지 않음)

3. 원격수업 운영 안내(원격수업 전환 시)

- 원격수업 플랫폼: 전북e학습터(공공LMS), Zoom, 배움꾸러미, EBS
- 학년별 원격수업 흐름

학년	원격수업 플랫폼	원격수업 흐름	학급 소통방
1학년	ebs+배움꾸러미 e학습터 Youtube 콘텐츠	수업참여 확인 + ebs 시청 + 배움꾸러미 + 학생맞춤형 소통(피드백)	밴드 카카오톡
2학년	ebs+배움꾸러미 e학습터 Youtube 콘텐츠	수업참여 확인 + ebs 시청 + 배움꾸러미 + 학생맞춤형 소통(피드백)	학교중이 카카오톡
3학년	e학습터 Zoom	수업참여 확인→콘텐츠 시청 및 쌍방향 수 업 병행, 과제제시 →맞춤형 소통(피드백)	학교중이 카카오톡
4학년	e학습터 Zoom	수업참여 확인→콘텐츠 시청 및 쌍방향 수 업 병행, 과제제시 →맞춤형 소통(피드백)	학교중이 밴드 카카오톡
5~6학년	e학습터 Zoom	수업참여 확인→콘텐츠 시청 및 쌍방향 수 업 병행→과제제시 →맞춤형 소통(피드백)	학교중이 카카오톡
특수 학급	국립특수교육원 (ww.nise.go.kr) EBS 콘텐츠	수업참여 확인→콘텐츠 시청→ 배움꾸러미→맞춤형 소통(피드백)	학교중이 카카오톡

- 출결 원칙
- 2023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출결, 수업,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준용

○ 등교중지(학진, 자가격리) 학생을 위한 대체학습

교실 수업장면 실시간 화상제공, 온라인콘텐츠, 학습꾸러미, 학습과제 등

※ 대체학습은 교육청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됨
가정체험학습 대체학습 대상이 아님

- 원격수업 시 학생 평가: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및 학생의 수행 동영상 등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하여 평가

○ 학부모 준비 사항

- 1교시부터 정상적으로 수업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자기관리능력)
2. 원격수업과 학습과제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자기주도적 학습능력)
3. 학급 원격수업 흐름 자녀와 함께 숙지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아동 청소년 시기는 부모보다 또래 집단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부모와의 갈등 해소, 고민의 상담, 진로 탐색, 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력이 더 크게 부각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학기 초는 새로운 아이들에 대한 탐색과 또래 집단 형성에 민감한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 청소년 자살 심리

- 충동성이 강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짐
-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도피심리가 강함
-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망감이 원인
- 동반 자살이나 모방 자살이 흔히 일어남

2. 청소년 자살 징후

언어적 단서	정서·행동적 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말하거나 문자메시지, 일기장, 낙서의 암시 - 내가 사라져 줄게 -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 이젠 정말 끝이야 - 아무것도 내 상황을 바꿀 수 없어 - 엄마, 아빠 “미안해” - “안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작스런 행동변화, 활동수준의 증가/감소 - 물건을 정돈해서 주변사람에게 나누어줌 - 소중한 물건이나 상장 등을 버리기 - 먹지 못하거나 혹은 과식 - 수면형태의 변화 - 단정치 못한 외모 - 감정과 관련된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 - 자기능력에 대해 회의하고 절망감을 표출 하거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힌다. - 죽음에 대해 관심을 보이거나 농담으로도 자살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3.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자살 위험의 아이들 발견하였을 때 부모들이 흔히 취하는 잘못된 태도

- ① 자책하기 : 우리 아이가 이러는 것은 다 나 때문이야
- ② 분노하기 :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어
- ③ 지키기 어려운 약속 하기 :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사줄게 / 유학 보내줄게
- ④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기 : 네 나이 때에는 다 그럴 수 있어 / 별거 아니야
- ⑤ 비아냥거리기 :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잘해

→ 위의 태도들은 부모님도 자녀의 자살행동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를 억제하고 최대한 차분하게 자녀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말에 경청하고 격려해주며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진심어린 사랑이 필요합니다.

5. 도박예방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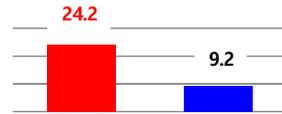
최근 인터넷 환경 변화와 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해 자녀들이 사행성(돈내기)게임, 스포츠 베팅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학부모님께 자녀들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내 사행성(돈내기) 게임으로 인한 도박문제의 심각성과 위험현황을 알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내 사행성(돈내기) 게임 문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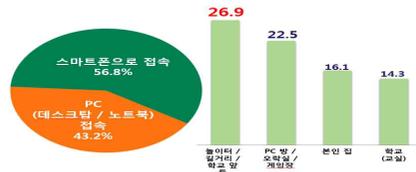
- 지난 3개월 동안 24.2%가 사행성(돈내기) 게임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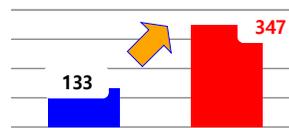
- 재학 청소년 사행성(돈내기) 게임과 흡연을 비교



- 도박문제 환경: 스마트폰 접속 56.8%, 길거리 26.9%



- 온라인 도박 사건 관련 2차 범죄 전년 대비 4배 증가



* 출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5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2016 경찰청

<최근 언론 보도>

- '불법도박 문자 전송' 청소년 알바 확산... "형사처벌 가능" [한경닷컴, 23. 3. 22]
-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치료와 함께 강한 규제 걸어야 [IT동아, 23.. 3. 7.]
- 청소년 온라인 도박 확산...사채 손댔다 목숨까지 [KBS, 23. 3. 2]
- 도박 사이트·마약 수령까지... '비대면 학폭' 진화 [연합TV 23. 3. 6.]
- '100명 중 5명 중독' 온라인 도박 빠진 위기의 청소년 [쿠기뉴스, 23.2.17]

- 자녀가 많이 하는 사행성(돈내기) 게임 종류



* 사행성 게임이란? 사행(射幸)은 '요행'의 가능성이 없는 일이 우연히 이뤄져 뜻밖에 얻는 황재 이익, 행운 등을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이란 사람들의 이러한 사행심을 이용하는 게임으로 주로 돈이나 물질이 걸리는 게임입니다.

자녀의 도박문제 식별

- 다음과 같은 장면이 반복 된다면 **추가적으로 탐색이 필요**
 - 용돈을 자주 요구하거나, 친구들에게 돈을 자주 빌린다.
 - 갑자기 가족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거나 용돈을 준다.
 - 고가의 브랜드 용품(옷, 시계, 가방)이 갑자기 늘었다.
 - 낯선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오거나 휴대전화 사용요금이 많아진다.

- 다음과 같은 장면이 발견 된다면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
 - 거짓말 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무언가 숨기려고 한다.
 - 돈이나 도박과 관련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자가 발견된다.
 - 부모님의 통장 계좌번호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일이 생긴다.
 - 자신의 물건을 팔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 가족의 돈을 훔치거나 부모의 귀중품이 사라진다.
 - 계좌를 조회하면 불문명한 입출금명의 사용내역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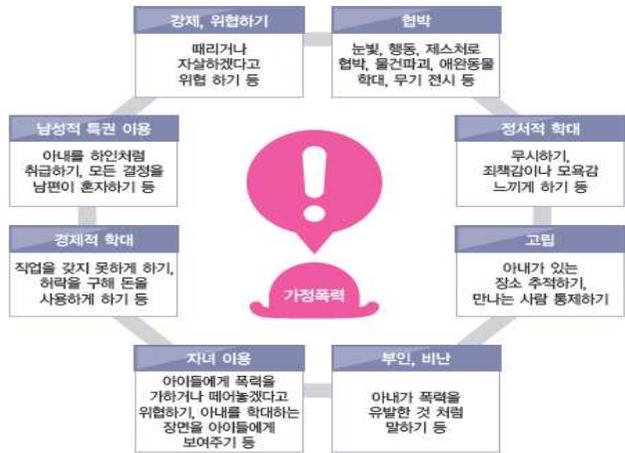
자녀의 도박문제 대처

- 자녀에게 도박문제가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 도박에 대한 자녀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합니다.
- 자녀와 함께 도박행동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자녀가 도박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 평소 자녀의 학교생활과, 친구관계, 고민이나 스트레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6. 아동학대 예방교육(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이란

- ▶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 ▶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아동학대란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행동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가정폭력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 긴급전화센터 136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또는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들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그 심각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모님들께서도 학교폭력으로부터 자녀를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학교폭력의 유형과 가정에서 확인 가능한 학교폭력 징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학교폭력의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강요	괴롭힘
금품갈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2. 학교폭력의 징후

연번	가정 내에서 확인 가능한 학교폭력 징후
1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하며 학교가기를 꺼린다.
2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3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4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5	멍하게 있고,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한다.
6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7	쉽게 잠에 들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간다.
8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9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 또한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인다.
10	이전과는 다르게 분노, 감정폭발 등의 공격행동을 한다.

※ 평소 가정에서 자녀의 학교생활, 또래관계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소통한다면 학교폭력은 예방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학교폭력 징후가 발견될 시 담임교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8. 학생 인권 교육

▶ 인권이란?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며 자신의 성격과 지능, 재능, 양심 등을 발전시키는 것 모두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함께 의미합니다.

▶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의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친인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에 무엇보다 중요하합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으리라 믿고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의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올바른 인권지킴이가 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가족의 인권 지수는?

☞ 어린이가 체크(✓) 해 봅시다.

내 용 (학생용)	체 크		비 고
	○	×	
1. 화가 나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 표현을 한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인권 지킴이 ▶ 4개-7개 인권 노력이 ▶ 8개 이상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해요
2.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때가 더 많다.			
3. 가족들 사이에도 비밀은 지켜지지 않는다.			
4.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는다.			
5. 형제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이 귀찮다.			
6. 잘못을 했을 때는 자주 매를 맞는다.			
7.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럽지 않다.			
8. 형제들과 비교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다.			
9.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기도 한다.			
10.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 부모님께서 체크(✓) 해 봅시다.

내 용(학부모용)	체 크		비 고
	○	×	
1. 가족과 함께 하는 일들이 많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인권 오염이 ▶ 4개-7개 인권 노력 ▶ 8개 이상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해요
2.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는다.			
3. 아이들의 비밀은 언제나 지킨다.			
4. 부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 아이들을 혼용하지 않는다.			
5.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한다.			
6. 아이들의 의사표현에 귀를 기울인다.			
7. 아이들이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8. 아이들 앞에서는 부부간에 정중한 언어사용을 한다.			
9. 공부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 애들이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9.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대응요령

보호자 및 선생님께서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본 자료나 성폭력예방 교육자료(<https://shp.mogef.go.kr>)를 통해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대응요령

성범죄 예방에 처벌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세요~~

위험이 느껴지면 이렇게 해요~

일단 피해요!

판단하기 어려울 땐 그 자리를 피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요

주위에 아이와 함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보호자에게 전화해요

공중전화나 주변에 아이와 함께 있는 어른의 도움을 받아 보호자에게 전화하세요

주위 어른을 찾아보세요

주위에 아이와 함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피해 발생 시 보호자는 이렇게~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많이 놀랐지?

강요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진정되면 우리한테 말해주세요~

믿어주고 감싸주세요

그럼, 알지~

즉시 신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성 긴급전화 1366

"이건 너와 나의 비밀이야" "말하면 날 혼내 줄 거야" 등을 가해자의 협박으로 어린이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절대 어린이들의 잘못이 아니며 어른들에게 알려야 또 다시 나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걸 인지시켜주세요

미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범죄는 모르는 사람이 저지른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부탁을 들어주거나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세요. 보호자와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른을 사안에 '지장'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렇게 정해진 어른이 아니라면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보호자 또는 선생님과 상의하라고 알려주세요!
(아는 어른이라도 놀러가자고 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하면 반드시 보호자에게 이야기하라고 알려주세요)

어른의 권위에 약한 아이들

보호자 혹은 선생님이 경계한 사람이 아닌 낯선 사람을 만난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낯선 어른이 부딪히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죄송해요, 다른 어른에게 부탁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얼른 그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주세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아이들과 성폭력 예방에 대해 서로 얘기를 나누어 보세요

"누가 안전한 사람일까?"
"우리 동네 대피소가 어디 있을까?"
"여디로 다녀야 안전할까?" 등

성폭력 피해지 지원체계

해비라가센터(1899-3075)

- 24시간, 상담, 신속한 증거채취 및 응급의료지원
- 피해자 조사,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등 법률자문

여성긴급전화 1366

- 피해자 긴급구조 서비스 연계
- 피해유형별 안내 및 상담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상담 보호시설 인도
- 피해자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 의료 법률 지원 및 연계

지역협의체 등 관계기관

- 경찰 검찰 의료기관 연계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상담

10. 성폭력 예방교육

1. 성폭력 개념 및 성폭력 예방법 지도

가. 성폭력이란 상대의 (허락) 없이 (강제)로 가해지는 (성)과 관련된 (신체), (언어), (정신)적인 폭력

나. 성폭력 예방법

- 1) 귀가 시간이 늦지 않도록 하고, 귀가 시간을 가족에게 알림.
- 2)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 등을 들으면서 걸어가면, 범인이 따라오는지 알 수 없고, 범인을 방어할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주의
- 3)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느껴질 때는 112에 신고.
- 4) 호루라기, 스마트폰 비상벨 기능을 활용하여 도움 요청 및 스마트폰 어플 '응급 사이렌'을 무료로 설치하여 사용할 것!
- 5) 청소년의 경우, 정액제 사용으로 인해 발신 기능이 정지되더라도,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면 112 등 응급전화 사용이 가능
- 6) 골목길보다는 넓고 환한 큰길로, 가능한 2명 이상 다닐 것
- 7) 집 앞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며, 수상한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거나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타지 않고 다음에 탐.
- 8) 인터넷 채팅이나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음.
- 9) 부모님과 함께 동네나 학교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이 어디인지 함께 손잡고 돌아다니며 알아둬.
- 10) 가족이 아닌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면 문을 열기 전에, 부모님에게 전화하여 방문 예약을 확인.

2. 성폭력 발생 시 행동요령

가. 가능한 빨리 보호자나 선생님께 알리고, 입은 옷차림 그대로 몸을 씻지 않고 경찰이나 성폭력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나.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이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어려움을 보호자나 선생님과 상의해야 한다.

다. 즉각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로 연락

라. 경찰 국번 없이 ☎ 112

11. 정보통신윤리교육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보급의 확대 등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인터넷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고 양질의 교육자료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유해정보, 스마트폰 중독 등의 양면성을 지니면서 학생들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정보 통신윤리 교육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 사이버폭력 예방 및 우리아이 지도방법 10계명 -

1. 사이버상의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하도록 지도한다.

- 얼굴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컴퓨터 너머에 있는 상대방을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상상하고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똑같은 대화를 눈을 가리고 하는 체험 등을 해본다.

2. 사이버공간에서도 현실공간에서와 같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지도한다.

- 사이버 상에서 하는 모든 글과 행동에는 기록과 자료가 남는다는 점을 설명해주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이버 공간에서 했을 때에 더 심각한 결과가 더 오래 간다는 점을 강조한다.

3.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사이버공간에 올릴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올리도록 지도한다.

- 내가 올린 사진,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해 보고,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상상하게 한다. 적어도 3회 (글쓰기 전, 다 쓴 후, 올리기 버튼을 누르기 전) 이상 이래도 괜찮을까를 생각해 본 다음에 행동을 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4. 아이들이 어렵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잘 들어줄 것이라는 안정감과 확신을 심어준다.

- 아이의 잘못을 원인으로 지목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한다. 상담과 신고를 격려하는 표어를 항상 붙여 두는 것도 좋다.

5. 사이버폭력은 엄연히 처벌받는 불법행위임을 사례를 통해 지도한다.
 - 영상과 신문기사 등의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알려주고 피해자, 가해자, 주변 인물 등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의 심정과 그 후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6. 학교와 연계하여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한다.
 -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시킨다.
7. 평소에 사이버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인해본다.
 - 학교, WEE센터, 사이버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이버경찰청 등 학교를 중심으로 관련기관과 사회운동단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고 도움을 요청한다.
8. 아이들이 바른 언어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 과도한 은어, 과도한 줄임말 사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언어규칙과 관습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점차 다른 사회규범에 대해서도 경시하게 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9. 아이의 학교생활과 사이버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아이의 사이버 활동(카카오톡, 카카오토티,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대하여 물어보고, 학교와 연계하여 아이의 학교생활 등을 확인해본다.
10.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메시지, 메일, 채팅은 열람 또는 답장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낸 메일, 과도한 호의, 오프라인 미팅 참가 등에 대해 경계심과 신중함을 갖도록 강조하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제안을?”이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 뚜렷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일단 의심을 갖고 신중해야 함을 강조한다.

12. 청렴실천 학부모 연수

■ 청렴의 정의

- ‘청렴(淸廉)’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의미
- 오늘날에는 개인수준의 도덕성에서 나아가, 법적 강제성과 의무수준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 ‘부패’란 공직자 및 일반국민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이 동원되곤 합니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청렴’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정의감을 근간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등 바람직한 가치를 실천하는 적극적 의미의 행동기준입니다.

■ 학교에서의 청렴 위반 행위

- 직무관련자(학부모 포함) 으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 수수행위
- 불법 찬조금 모금 또는 징수행위
- 회계 운영 및 집행 관리의 부적절 이행
- 법령 및 교육자제법규(조례, 규칙), 지침 등의 부적절이행

■ 잘못된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청탁행위

- 운동회, 현장학습 등에 식사나 간식제공, 상담주간이나 스승의 날에 간단한 선물 제공, 모바일 상품권(커피, 빵) 등을 보내는 경우 등

■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및 촌지에 대한 이해

- **학교발전기금:**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른 기부 및 학운위 절차에 따른 적법하고 자발적인 모금 이외는 '불법찬조금품'임
- **불법찬조금:**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 **촌지:** 학부모가 교원에 제공하는 금품으로 잘못된 관행이며,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부패행위에 해당함

● 학교발전기금의 이해

학교발전기금이란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하여 개인·단체·학부모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기부금품'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용계획 수립 후 심의·의결을 거쳐, 학부모 등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또는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한 '모금금품' 및 '자발적 조성금품'을 '학교발전기금'이라 하며, 이외의 모금은 '불법 찬조금품'에 해당함.

● 불법찬조금의 의미

- 가. 학교 또는 자생단체(학부모회 등)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임의로 모금하는 사례 - 학교 강당 개관식 준비 등
- 나. 스승의 날, 수학여행, 운동회, 현장학습 등 교육행사 시 학부모가 각종 경비를 부담하는 사례: 도시락, 식사비 제공 등
- 다. 운동부 학부모후원회에서 전지훈련, 출전경비 등의 명목으로 회비를 모금하고 불법 집행하는 사례
- 라.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절차를 벗어나거나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기부행위

● 촌지의 의미

- 가. 각종 학교 행사, 표창 등에 대한 보답으로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및 향응
- 나. 학부모들이 학생의 담임교사나 다른 교원에게 보답으로 제공하는 금품 및 향응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

금액 제한없이 제공가능	일반인 (직용대상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 가족, 연인 등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 퇴직한 은사님에게 드리는 선물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선물
100만원 이하 제공가능	직무 관련 여부 상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족이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상급 교직원이 하급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
5만원 이하 제공가능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외래 목적이 인정됨)	직무 관련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교직원이 직무 관련 없는 다른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직장 동료 교직원들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
제공 불가	직무 관련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외래 목적이 인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하급 교직원이 상급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직무 관련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외래 목적이 인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적으로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담임 교사에게 학생(학부모)이 드리는 선물 입찰, 계약,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국민신문고 국민신문 110

국민권익위원회

1 방과후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지 않습니까?

A 방과후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지 않습니까?

A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금지)이 적용됩니다.

3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코치·감독에게 지도학생(학부모)이 선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까?

A 지도학생(학부모)이 드리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 됩니다.

4 대학교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됩니까?

A 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됩니다.

5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케익, 기프트콘 등의 선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까?

A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 됩니다.

6 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학생들(학부모)이 축의금을 제공해도 됩니까?

A 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축의금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 됩니다.

※ 학생들이 불러주는 축가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7 학생(학부모)이 작년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습니까?

A 현재 담임교사, 교과목 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8 교과목 담당교사인 기간제교사의 생일에 5만원 짜리 상품권 선물은 드려도 됩니까?

A 기간제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고, 학생의 성적 평가 등을 하는 교과목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9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해서는 안 됩니까?

A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생들의 수능시험 격려를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해도 됩니다.

10 졸업식날 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려서는 안 됩니까?

A 졸업식날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것은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13. 양성평등·성교육, 출연·음주 예방교육, 응급처치, 교내 감염병 예방 교육

1 가정 내 성교육

□ 성폭력 예방 준수사항

- (1)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
- (2) 성폭력을 하는 사람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평소 친절하고 예의바른 사람이 많다.
- (3)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 보다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 길을 이용해서 다닌다.
⇒ 혼자 다니는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되도록 둘 이상, 친구와 함께 다닙니다.
- (4) 타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을 때, 싫은 느낌이 있는 경우 단호히 싫다고 이야기한다.
- (5) 의도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경우를 경계하라.
- (6) 위급한 상황일 경우 집이나 가재도구로 창문을 깨뜨려 외부에 알리는 것이 좋다.

□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 (1) 배우고, 가르치고, 연습해야 합니다.
: 자녀의 성적발달 등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며,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 등을 알고 현재 어려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 (2) 건강하고 모범적인 경계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성적으로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 (3)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No"가 존중되는 경험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많은 대화가 자녀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 (4) 자녀에게 성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접촉과 용납할 수 없는 접촉에 관하여 분명하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 (5) 부모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교사나 상담기관을 찾아갑니다.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녀 교육

- (1) 성폭력 예방을 위해 자녀들을 올바른 성가치관을 갖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 타인에게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지 마라
 - 상대방의 거부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 성폭력은 범죄행위를 명심해라
 - 불쾌하거나 나쁜 접촉은 장난이라도 하지 마라
 - 너의 성가치관, 행동에 기준을 가져라
 -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은 너와 다를 수 있음을 알아라
 - 너를 소중히 여겨라
 - 부모가 항상 너의 편이며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 (2) 성폭력 피해 도움 청할 수 있는 곳
 - 여성 긴급전화 ☎ 1366 - 청소년 상담전화 ☎ 1388 - 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 117

2 가정 내 양성평등 교육

□ 양성평등의 개념

-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손상당해서는 안 되며,
-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며,
- 가족과 사회의 번영에 동참하는 길이 봉쇄되어서는 안 되며,
- 인류에 공헌할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낙오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양성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남녀 모두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 양성 평등 교육의 목적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역할 고정관념의 문제점을 깨닫게 하고 양성 평등 의식을 키워줌으로써 남녀가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며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함에 있다.

□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평등

평등한 부부란?

- 남편과 아내의 시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설거지나 아이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 여성도 남성만큼 사회활동과 여가시간을 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부

□ 가족의 변화는?

- 급변하는 사회적 조건에서 변화에 잘 적응하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다
- 비혼 세대,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다
- 가족 내 갈등은 가족 경험의 과정이다.

□ 자녀양육 교육에 있어서 평등

-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하십시오.
-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진로, 학업 선택 시 남녀 영역이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 아들이 친절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3 가정 내 흡연/음주 예방교육

□ 청소년 흡연의 문제점

- 1)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정신적, 신체적 미성숙 상황에서 발암물질 및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중독성과 건강 위해의 심각성이 커집니다.
- 2) 청소년기 흡연자의 대다수가 성인기 흡연자로 이어지면서, 청소년 흡연자는 잠재적으로 성인 흡연자로서 니코틴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입니다.
- 3) 다른 약물 남용, 음주, 본드 흡입과 반사회적 행위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흡연을 하는 학생이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키가 평균 2.54cm 작은 편이다.

흡연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으나 도움이 된다는 근거 없다

청소년에서의 흡연은 우울증과 상관성이 있어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

비흡연 도래에 비해 기침, 가래, 숨참, 천명 등의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며 운동기능 저하가 나타납니다. 청소년 흡연자에게서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이 많이 발견되며 (음주, 본드 흡입 등의 행위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약물 과다복용 및 약물 의존도를 증가시킵니다.

니코틴 중독, 폐기능 및 폐성장저하, 천식, 조기 복부 대동맥축상경화증을 유발하며, 이후 다른 만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흡연은 조기 사망의 원인이며, 성인흡연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초기 증상이 이미 초기 성인기 흡연자에게 나타납니다.

□ 청소년 음주의 문제점

- ❖ 술은 간질환, 위장질환, 췌장염, 알코올성 말초신경계 질환, 알코올성 치매, 성격장애 등 여러 질병을 일으킵니다.
- ❖ 청소년기에 음주를 시작하는 경우, 습관성 음주자나 만성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쉽습니다.
- ❖ 청소년기에 술을 마시면 빠른 속도로 뇌신경 세포에 알코올이 확산되어 마비 현상이 일어나고 감각과 운동의 둔화가 초래됩니다.
- ❖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고 기억력이 감퇴되며 파괴된 뇌신경 세포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 금연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 ◆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 ◆ 자녀에게 혹은 가족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 ◆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습니다.
 -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흡연 시 발생 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 먼지 등의 표면에 부착 한 뒤 몇 시간~몇 달 장기간 재배출(3차 간접흡연)됩니다.
- ◆가족과 함께 외식 시에는 금연 지정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 ◆자녀가 담배를 피우는지 잘 살펴주시고 금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하되 무엇보다 사랑으로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와의 의미 있는 대화시간을 가지세요!

청소년들에게는 그 어떤 금연운동보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4 심정지 및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 교육

- 의식이 없는 경우: 먼저 119에 연락한 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경우 즉시 시행.
 - 뇌세포는 4분 이내 산소공급이 안되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빠르고,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일반인은 “응급환자를 발견한 즉시 이를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에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의거 선의의 응급구조자의 행위를 보호함
(일반인도 생명이 위급한 경우 응급구조를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

1. 심정지 확인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자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한다.

2. 119신고 & 제세동기 요청
근소리로 주변 사람을 지목해 도움을 요청한다.

3. 가슴압박 30회 시행
환자의 가슴중앙에 딱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이용하여 분당 100회~120회 속도와 5~6cm 깊이로 가슴을 압박한다.

4. 인공호흡 2회 시행
환자의 머리를 잘리고, 턱을 들어 돌려 기도를 확보하고 가슴이 올라갈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다. 2회 시행한다.

5. 가슴압박 & 인공호흡의 반복
30회 가슴압박과 2회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도착 할 때까지 반복하여 시행한다.

6. 회복자세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고 호흡이 돌아오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놓혀 기도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서 기본소생술 순서 : 가슴압박(C)-기도개방(A)-인공호흡(B) 순으로 실시
- 심폐소생술 동영상 안내: 국민안전처-재난안전-교육, 홍보동영상 참고
- AED (자동 심장 제세동기) 사용법 - 심정지 응급상황이외에는 절대사용금지.



- ① 전원켜기 ⇨ ② 2개의 패드부착 ⇨ ③ 제세동 시행 ⇨ ④ 심장리듬분석 ⇨ ⑤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 (AED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라 시행)

□ 기도폐쇄 : 복부 밀어내기법(Heimlich 법) -음식이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일 때

- 환자의 뒤에 서서 환자의 다리사이에 처치자의 한쪽 발을 놓아서 지탱한다.
- 양팔로 허리를 감싼 다음 처치자의 한쪽 손을 말아 쥐고 환자의

검상돌기(명치)와 배꼽의 중간에 댄다.

-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싼 후에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강하게 밀쳐 올리는 것을 반복한다.



5 교내 감염병 예방교육

□ 목적

학생이 법정 감염병 등 학교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수업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타 학생에게 감염되어 감염병이 학교 내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바 “**감염학생에 대해 등교중지**”하여 해당학생의 건강관리는 물론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데 있다.

가. 등교중지 대상 및 출결 관리

1. 등교중지 대상
 - 감염병 예방법 제 2조에 규정된 법정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및 감염병 병원체보유자
 - 그 외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2. 등교중지 학생의 출결 관리
 - ※ 관련법규: 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교과부 훈령 205호(2011.2.24. 일부개정)
 - 학교장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의심학생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 됨
 - 등교중지 필요 여부와 등교 중지 기간을 파악 위해,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한 가지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
 - **감염병 예방수칙을 숙지**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합시다

□ 교내 응급환자 관리 절차 안내 (교육부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 병원 의뢰가 필요한 경우, 학생이 위급하거나 위독할 때, 학부모님께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하나 위급한 응급 상황 시 보호자와 연락 후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 혹은 인근 병원으로 먼저 이송합니다.
2.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에 연락할 것이며 보호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응급 이송할 것입니다.

□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병명	초기 증상	등교 중지 예상 기간
홍역	귀 뒤에서부터 발진, 발열	발진 후 5일까지
수두	발열, 발진, 수포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부어오른 귀밀이
유행성 이하선염	발열, 귀밀이 부어오름, 식욕부진	가라앉을 때까지(약 5일) 열이 내리고 이틀이
인플루엔자	38도 이상 고열, 관절통, 두통, 호흡기 증상	지날 때까지(약 5~7일)
코로나19	코물, 기침, 두통, 호흡곤란, 인후통 등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권고

마스크는 코 위 까지 착용

흐르는 물에 30초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기

기침할때 옷소매로 가리기